

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	0750 - 1819 - 1
신청인: 강일구(생년월일:1976.10.09),	담당자: 황정선 (전화:02-2171-6504)



※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

주민등록번호	761009-1037911	인감증명서	본인	대리인
번호			☐	

성명 (한자)	강일구 (姜壹求)	인	
국적		감	

주소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63길 10, 117동 1401호 (이문동, 이문e편한세상아파트)		
----	--	--	--

용도	매도용	[] 부동산 매수자 [] 자동차 매수자			
		성명(법인명)	빈칸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	주소 (법인소재지)			
	일반용	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. (발급신청자) (서명)			

비고	인감증명서
----	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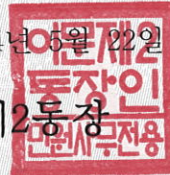
-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
-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0표시됩니다.
-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,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,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()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
-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합니다.
- 부동산 또는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)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매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경우에는 "빈칸"으로 표시됩니다.
- 용도의 일반용란은 '은행대출용', 'OO은행의 대출용으로만 사용' 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- 매수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되, 주소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.
-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,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, 한정후견인, 성년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는 비고란에 합니다. 비고란은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 성명 등 민원인 요청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.
-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창구(www.minwon.go.kr)를 통하여 「발급일,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, 주민등록번호, 발급기관」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미리 신고해야 하는 불편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 편리한 제도입니다.

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.

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제2동



[12011100012203234063001-130758175210502900310] 주소지 증명청 : 이문제2동(9/8)